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인쇄인 金在克 TEL.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19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11月 25日(火曜日) (1)

관광 휴식등 기능시설범위 확대 일반인도 시설물 사용 수익가능

개정 어항법, 어업인 소득증대 민자유치 촉진 도모

지난 11월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의 활성화 도모를 주요골자로 하는 어항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어항법 신·구 주요조문 대비표 2면에 상보>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어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핵이 될 수 있도록 어항기능에 수산물 유통시설을 추가하고 어촌 환경의 개선과 어촌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시설 및 관광 휴식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어항시설사업을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경우 종전에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어항시설용 부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 민자유치의 범위가 제한됐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일부 기능시설, 문화 복지시설, 관광 휴식시설용 부지로 확대하는 한편, 비관리청이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유치의 범위를 확대 어항시설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관리청이 기본시설구역, 기능시설구역 및 복지시설구역으로 3분하여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항시설구역의 구분없이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어항을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

라 종합적·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허가·신고없이 어항시설을 무단사용 적용할 경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2배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항시설의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사용료 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징수한 경우에는 국가수입으로, 시·도지사가 징수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금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 어항법에서는 한국어항협회가 어항법에 의한 사무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항협회 원남동 시대 개막

전 수검 청사를 협회 독립청사로
한국어항협회의 원남동 시대가 개막된다.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국유재산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서울시 중로구 원남동 103번지(전 국립수산물검사소 청사)의 토지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전 국립수산물검사소의 토지 9백67㎡, 건물5동 8백20.7㎡, 공작물 11식 등 청사일체를 협회 독립청사로 사용케 됐다. 협회는 오는 12월 22일 원남동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어항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주요내용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민자유치 촉진을 통한 어항개발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제정된지 24년만인 지난 93년 처음으로 개정된 어항법은 여러 가지로 어항발전을 위한 갖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어항이 어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 핵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유인책의 미흡이 가장 큰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다.
실례로 어항개발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엔 발목을 잡는 제한규정이 엄존함으로써 선뜻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실제적인 어항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본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의 문호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항개발의 이중효과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를 좀더 풀이하면 어항을 어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 핵이 될 수 있도록 어항의 기능을 관광, 교통, 유통 등으로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파제 물양장 등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일부 기능시설, 문화 복지시설, 관광 휴식용 부지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소유권 취득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어항 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어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시설 및 관광 휴식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도 장래의 어항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은 수산업이 지난 수십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효자 노릇을 해오다 금년부터 결국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이 힘에 부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어항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컫고 있다. 특별한 밀천 안들이고서도 높은 외화 가득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바다가 최고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바로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가 기회있을 때마다 외쳐온 선진 어항어촌 건설의 방향 즉 어항을 해양 관광, 휴식 공간 및 만남·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주장은 이러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다행히 이번 어항법 개정을 통해 그간 투자목적은 있어도 이를 가로막는 몇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어항발전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우리 속담이 있다. 문전옥답이 아무리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면 무엇하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
이런 관점에서 이번 어항법 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항발전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므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역 수산인들이 스스로 앞장서 어항발전을 위한 모석을 해보는 진일묘한 의식도 함께 가져야 할 때임을 점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 개정 어항법

내년 어항건설 예산 1,639억 금년비 5.2%증가 1·3종 32개항에 집중투자

내년도 어항건설사업비가 1천6백39억1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80억7천8백만원(5.2%)이 늘어난 수준이다.
항종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관리항인 제1·3종어항 건설비는 1천4백46억3천9백만원으로 올해보다 80억8천1백만원(5.9%) 증가되었고, 시·도지사 관리항인 제2종어항은 3백85억원(지방비 50% 포함)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1·3종어항 건설사업비 가운데 일반회계 6백24억5천5백만원, 농특회계 8백21억8천4백만원은 '92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투자 중에 있는 13개항에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농특회계 8백21억8천4백만원은 '92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투자 중에 있는 19개

항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3종어항의 건설시공을 위하여 시공항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시공 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제2종어항 개발사업비 3백85억원 중 국비지원 1백92억5천만원은 각 시·도간의 균형개발과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제2종어항을 건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기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술자를 투입, 시공현장에 대한 공경, 품질, 인력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부실한 점은 시정토록하며, 시·도 및 시·군 어항공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공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신항만 1.4규모 울산 부산등 신규 발주

총공사비 7천억원 규모의 울산신항만 1단계 방파제측조공사등 신규항만공사 7건이 내년중 집행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울산신항을 비롯 부산신항, 광양항등 6개항만에 내년부터 1조4천8백억원을 들여 방파제, 안벽, 호안등 신규공사 7건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들 신규공사중 울산신항만 방파제와 부산신항 호안, 목포신항안벽측조등 4건에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별 주요신규사업을 보면 울산신항의 경우 방파제공사의 설계작업이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7천70억원을 들여 1단계(2.45km)공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1998년도 어항건설 예산 (단위:백만원)

항종	재원	'98예산(A)	'97예산(B)	증감(A-B,%)
계		163,916	155,838	8,078(5.2%)
제1·3종어항	일반회계	144,639	136,558	8,081(5.9%)
	농특회계	62,455	54,374	8,081(14.9%)
제2종어항	일반회계	82,184	82,184	-
	농특회계	19,250	19,250	-
경상경비	일반회계	19,250	19,250	-
	농특회계	27	30	△3(10%)

개정어항법 신·구 주요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漁港施設"이라 함은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의 施設을 말한다. (중략) 나. 機能施設 (1)·(2) (생략) (3) 漁船修理場·漁具乾燥場·漁具製作場 등 漁船·漁具保全施設 (4) (생략) (5) 活魚一時保管簡易施設 (6) 荷役機械, 製氷·冷凍·冷蔵施設, 加工工場·販賣場·野積場 등 水産物處理加工施設 (7) (생략) (8) 管理·觀測施設, 管理船舶의 保管 및 接岸施設, 機資材 倉庫 등 漁港管理施設 (9) (생략) 다. 福祉施設 (1) 診療施設·宿泊施設·沐浴施設·休憩施設 등 漁民厚生施設 (2) 낚시터·遊漁船·모터보트 등의 收容을 위한 레저用 基盤施設 (3) (생략) (新 設)</p> <p>(중략) 第12條(事業施行者) ①(생략) ②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 設)</p> <p>③ - ⑤ (생략) (新 設)</p> <p>(중략) 第15條(事業代行) ①非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업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非管理廳은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 設)</p> <p>②第13條의 規定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본다. (중략) 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인하여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非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된 土地중 漁港施設用敷地를 제외한 殘餘土地에 대하여 그가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p> <p>(新 設)</p> <p>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 및 施設에 대하여는 總事業費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의 價額을 價額의 범위안에서 당해 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포함한다) 및 漁村契가 아닌 者에게는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을 사용·收益하게 할 수 없다. ④ (생략)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 價額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2條(定義) ----- 3. -----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 各目的의 施設과 漁港區域밖에 있는 다음 各目的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 나. 機能施設 (1)·(2) (現行과 같음) (3) 漁船建造·修理場, 漁具乾燥場, 漁具製作·修理場, 野積場, 機資材倉庫 등 漁船·漁具保全施設 (4) (現行과 같음) (5) 水産物市場·水産物委販場·水産物直賣場·水産物集荷場·活魚一時保管施設 등 水産物流通·販賣施設 (6) 荷役機械, 製氷·冷凍·冷蔵施設, 水産物加工工場 등 水産物處理·加工施設 (7) (現行과 같음) (8) 漁港管理施設·海洋觀測施設·船舶出入港申告機關 등 海洋水産關聯 公共施設 (9) (現行과 같음) 다. 文化·福祉施設 (1) 診療施設·福祉會館·體育施設 등 福祉施設 (2) 展示館·圖書館·學習館·公演場 등 文化施設 (3) (現行과 같음) 라. 觀光·休憩施設 (1) 遊覽船·낚시漁船·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收容을 위한 레저用 基盤施設, 地域特産品販賣場, 생선횃집 등 觀光施設 (2) 宿泊施設·沐浴施設·娛樂施設 등 休憩施設</p> <p>第12條(事業施行者) ①(現行과 같음) ②----- ----- 漁港施設의 補修·補強工事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甚미한 工事を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 ⑥ (現行 第3項 내지 第5項과 같음) ⑦管理廳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p> <p>第15條(事業代行) ①非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을 管理廳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非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防波堤·物揚場 등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第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승인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2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에 대하여 그가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 1. 第2條第3號나目的의 規定에 의한 機能施設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用 敷地 2. 第2條第3號다目的(1) 및 (2)의 規定에 의한 文化·福祉施設用 敷地 3. 第2條第3號라目的의 規定에 의한 觀光·休憩施設用 敷地(레저用 基盤施設敷地를 제외한다) 4. 第2條第3號바目的의 規定에 의한 敷地외의 土地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로서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에 대하여는 國有財産法 第33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非管理廳에게 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④-----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礙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總事業費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土地의 價額을 價額의 범위안에서 당해 非管理廳에게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但書 削除> ⑤ (現行 第4項과 같음) ⑥----- 非管理廳이----- 土地-----</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등) ①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 또는 直轄市·道의 條例(第2種 漁港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定하는 기간과 범위내에서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이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의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的 許可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盆目的에 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p> <p>(新 設)</p> <p>(新 設)</p> <p>③·④(생략) ⑤漁港施設의 사용 및 占用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海洋水産部令 또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定한다. (新 設)</p> <p>(중략) 第30條(使用料등의 徵收)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市·道知事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② (생략) (新 設)</p> <p>(新 設)</p> <p>(중략) 第31條(使用料등의 귀속)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國家의 收入으로, 第2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新 設)</p> <p>(중략) 第35條(權限의 위임) ①·② (생략) (新 設)</p> <p>(중략) (新 設)</p>	<p>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된 土地및 施設을 無償으로 사용·收益하는 非管理廳은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管理廳이 定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收益期間은 당해 土地 또는 施設의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⑧非管理廳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또는 施設의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 또는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5條의 2(漁港施設의 賣却·讓與) ①管理廳은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한 土地중 第25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賣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管理廳은 國有財産法 第33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土地를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③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을 새로운 管理廳에게 讓與할 수 있다. 1.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의 지정이 解除되고 당해 漁港이 第2種 漁港으로 지정된 경우 2. 第2種 漁港의 지정이 解除되고 당해 漁港이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으로 지정된 경우</p> <p>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등) ①----- 市·道의 條例-----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申告없이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할 수 있다. 1. 漁船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船舶 3. 海洋水産部令이 定하는 海洋水産關聯團體所有의 船舶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의 사용 또는 占有許可를 할 때에는 漁港의 機能 및 公共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용 또는 占用的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 ⑤·⑥(現行 第3項 및 第4項과 같음) ⑦----- 市·道-----</p> <p>第28條의 2(漁港施設의 유지·관리등) ①第25條第4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는 漁港施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은 第25條第4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에 대하여 漁港施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指示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第30條(使用料등의 徵收) ①----- 市·道----- ② (現行과 같음) ③非管理廳은 第25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의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3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30條의 2(辨償金の 徵收) ①管理廳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使用料 또는 占用料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辨償金を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를 제외한다. ②第3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金の 徵收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31條(使用料등의 귀속) ①漁港施設에 대한 使用料·占用料 및 辨償金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徵收한 경우에는 國家의 收入으로 하고, 市·道知事가 徵收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의 관리를 위한 費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第35條(權限의 위임·委託) ①·② (現行과 같음) ③海洋水産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事務는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協會 또는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p> <p>第38條의 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海洋水産部長官이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協會 또는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	---

동

정

제17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4일 부산 가덕신항만개발 공사 기공식에 참석, 11일에는 록반더브란더 벨기에 화란 어권 지방정부 수상의 예방을 받고 한·벨기에간 해운항만분야 협력증진에 대해 협의, 17일에는 남극세종기지지원동태발대식에 참석, 18일에는 고려대 고위자연자원정책과정에서 강연을 실시, 20일에는 제17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22일에는 해양목장화 세미나에 참석.

대한적십자 바자회 개장식에 참석, 17일에는 통영시 서호동 통영수협 신용부 및 어업인 복지회관 준공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1월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12일에는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청사 준공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2일 경호무술 전국합기도검도대회에 참석, 4일에는 제5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에 참석, 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사 97년도 대의원총회에 참석, 10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4H 중앙정진대회에 참석, 14일에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해단식에 참석, 21일에는 제7차 전남문화원 임직원연수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1월3일 광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행사에 참석, 15일에는 송원문예백일장 시상식을 거행.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1일 피키스탄 네팔 공사현장에 출장 8일 귀국, 13일에는 한국농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14일에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 클럽 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3일 한국범죄방지재단 광주 전남지부 창립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11일 진도 공사현장을 방문.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0일에는 제주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발족대회를 개최.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1월10일 여수 공사현장을 방문.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이사관 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심판관 김한두 □부이사관 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수석조사관 최정섭 □서기관 승진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실 정형택 △중앙해난심판원 행정실 강기순 □과장급 직위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조



■한국어합협회는 11월17일 고성수협(조합장 김상태)으로부터 그 동안 고성수협관내 항포구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어업인 의식고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왼쪽 최일선 어항청소선 907호 선장)

사관 박영선(10월28일자) □서기관 승진 △해양정책실 연안역관리과 장병희 △어촌개발국 어촌계획과 전기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병표(11월1일자) △해양수산부 근무 김윤수(11월15일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홍래형(11월17일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감사 김상열 △기획이사 정석균 △업무이사 김재호 △위탁사업단장 금홍일(11월15일자)

경시이전

▲국립수산물검사소는 11월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1동 192-7번지로 청사를 이전했다. 전화번호 : 소장실 (0344) 976-0190, 서무과 (0344) 976-1056-8, 검사과 (0344) 976-2753-5, 분석과 (0344) 976-3022-4, 전산실 (0344) 976-3708, 당직실 (0344) 976-5874.

의축

▲주홍장씨(신라교역주식회사 상근고문)의 3녀 도희 양이 11월9일 전북 군산시 군산결혼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변경

▲박근홍씨(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우성아파트 105-107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345) 417-4307.

▲피경만씨는 최근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상무이사)로 근무처를 변경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4-5번지, 전화번호: (0343) 84-9252.

의원가입

▲구본수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과장)

의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케이에스에스엔지니어링(사장 김영수)

▲주식회사범아엔지니어링(회장 안철호)

▲주자도수산협동조합(조합장 박동기)

조달청 공사계약 점차 축소

요청범위 30억이상으로 상향

국가기관의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공사가 현재보다 축소되는 등 조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선정한 조달행정분야 개혁과제의 추진계획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조달분야의 행정내부규제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쇄위 실무회의는 현재 국가기관의 공사예정금액 20억 원이 넘는 공사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의뢰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달청 계약요청범위를 우선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공사로 변경하되 효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쇄위는 또 계약변경의 경우 수요부처에서 변경설계한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 후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는 조달청에서 변경계약토록 하고 있어 사업지연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시설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도 수요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되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에만 조달청에 맡기기로 했다.

제한적최저가 축소

내년 12월 30억으로 하향

정부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초부터 30억 원미만으로 축소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현행 대상금액 58억 3천 만 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대상공사의 규모가 일반공사는 1억 원 이하(전문공사는 5천 만 원 이하)로, 지명경쟁대상공사 규모는 일반공사가 3억 원 이하(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계약보증금을 낙찰률에 관계없이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토록하고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은 50% 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반환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대체한 후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을 관련협회 단체 등에서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월16일 정부조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건설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공포와 동시에 시

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8억 3천 만 원 미만인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규모가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되고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SOC시설 제3섹터 방식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 SOC분야의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사, 공단 간의 협력개발방식인 제3섹터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주식의 매각대금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서 이같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초기투자비 대비 자본 회수기간 장기화 등이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어항건설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업종 : 상업항, 공업항 및 어항설계, 공유수면 매립설계

主要營業分野

- ① 港灣 및 海岸
 - 商業港, 工業港 및 漁港 設計
 - 公有水面 埋立 設計
- ② 道路 및 構造
 - 高速道路, 主要 國道 設計
- ③ 上下水道
 - 管路, 工業用水路 設計
 - 下水處理場 設計
- ④ 團地 및 都市 計劃
 - 都市計劃에 의한 宅地開發 設計
 - 團地內 一般 土木 設計
- ⑤ PLANT 土木
 - 各種 PLANT 基礎 및 構造解釋
- ⑥ 鐵道
 - 國鐵 및 産業用 鐵道 設計
 - 高速電鐵 設計
- ⑦ 土質 및 基礎
 - 土質 調査 및 原位置 試驗
 - 土質 및 基礎의 諸般 成果 分析
 - 軟弱地盤 處理 設計
 - 地下 假說 構造物 設計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 엔지니어링

代表理事 金榮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9-58/인천 남구 주안 7동 1432-24

☎ (02)579-3790/(032)875-4660 FAX (02)579-3793



겨울철에 흔한 질병

파로 피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 감기예방
동상은 40~42℃의 온수에 담그면 효과적

모든 사람이 겨울과 함께 연상하는 것은 추위, 눈, 외루 등이고 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추위와 감기가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기는 여름에도 걸리니까 추위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콧물, 코막힘, 기침, 목아픔, 때로는 열을 동반하는 질환을 감기라고 한다.

감기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백신에 의한 것, 약물에 의한 것,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지만 백신이나 약물에 의한 예방법은 그 효과가 확실치 않고 가격이 비싸서 고령환자에게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감염된 환자를 멀리하는 것으로 밀폐된 다수의 군중이 모인 장소를 피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파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동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동상이란 피부와 같은 신체의 연부조직이 -2℃ 내지 -10℃의 찬기운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산소 소비가 저하되고 세포의 대사가 정지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부위를 침범하면 부적당한 의복, 바람잡도, 혈관 질환, 운동부족 산소결핍 등이 동상에 잘 걸리게 한다.

겨울에 야외에서 일하거나 물일을 많이 하는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잘 걸릴 수 있다.

동상의 증상은 한냉에 노출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으나 다시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홍반, 종창발적, 소양감 동통 등을 나타낸다. 심한 경우에는 괴사와 같이 조직 손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조직 손상이 없는 부위에는 감각마비, 발한증대, 한냉에민증, 영양장애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동상의 치료는 종래에는 천천히 실온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최근에는 40~42℃의 온수에서 손톱의 색이 분홍빛을 띠 때까지 담궈두는 급속 난온 치료법이 더 효과가 좋고 치유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한 대책을 세우고 적당한 운동을 하여 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겨울에는 빙판이 많아 넘어지는 수가 많은데 넘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손을 잡고 엉덩방아를 찧는다. 이때 손목뼈(요골)와 척수(요추)에 골절이 빈번히 생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요추의 골절이 잘 올 수 있다. 손목의 경우는 골절의 문외한도 알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지만 척추의 골절은 허리만 아플뿐으로 눈에 띄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넘어져 허리가 아픈 사람은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3)

第2章 浚渫工

펌프선의 작업능력은 대체로 토질 조건과 배송거리에 따라 표준적인 작업능력이 설정되어 있다. 이 이외에 준설의 불균형, 준설깊이 등의 현장 작업효율, 조류, 파랑조건, 장애물의 다소 등 실작업시간을 가미한 능력 설정에 의하여 공기에 맞도록 규격을 결정한다.

펌프준설선의 능력 산정에는 대체로 다음식이 사용되고, E, η는 작업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이다.

$$Q = q \times E \times \eta \times T$$

Q: 펌프준설선의 1일당 준설량 (m³/일)

q: 펌프준설선의 1시간당 작업능력 (m³/hr)

E: 현장작업효율

n: 실작업시간율

T: 펌프준설선의 1일당 운전시간 (hr)

② 배사관 등의 규격

해상 배사관 등의 규격은 펌프준설선의 규격에 수반하여 대체로 표 2.2.4에 보이는 조합이 사용되고 있다. 육상 배사관도 해상 배사관의 관지름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배사관 조달의 형편에 따라서는 관지름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서로다른 관지름사이에 테이프관을 삽입한다. 이 이외에 밴드관, 전환밸브, 목제패킹, 고무패킹, 볼트, 너트 등 배관에 필요한 부속품의 규격·수량도 동시에 결정한다.

(2) 준비공

준비공에는 기준점측량, 구역의 표시 및 사전심천측량 등이 있다.

준설공사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위험물 탐사」, 「저질조사」는 공사발주전에 발주자측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점측량은 준설작업시에 펌프준설선의 작업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통상 기준점은 시공에 적합한 지점을 육상에 설정하는데 육상만으로 불충분하면 해상에 측량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측점을 설정한다.

구역의 표시에는 작업구역과 준설구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구역의 표시는 부표로, 준설구역의 표시는 장대로 한다. 설치방법은 측량대에서 트랜시트(transit) 또는 6분의에 의하여 유도한다. 장대나 부표를 보면서 위치나 구역을 판단할 경우는 풍향이나 조류로 인한 이동을 고려한다.

준설토량은 준설선의 지형과 준설 후의 완성된 형태를 대비하여 산출한다. 착수전의 지형은 계약시의 설계 도서에 제시된 공사구역의 심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나, 그 경우에는 착수전에 현상확인측량의 성과와 설계도서를 대조한다.

심천측량은 음향측심기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규모인 심천측량이나 측량선의 운행이 불가능한 얕은 수역에서는 레드(lead)나 스태프(staff)가 이용된다.

본선의 위치확인이나 준설구역을 확인할 경우는 육상이나 측량대의 기준점에서 트랜시트(transit)이나 6분의를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또 육상 기준점이나 측량대가 특수한 장소나 조류가 강한 곳에 있을 경우는 본선에서 6분의로 측각하고, 3간분도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플롯(plot)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표 2.2.4 펌프선·표준작업선단구성

	자항양묘선		해상관장치			교통선		
	들어올리는 능력(t)	마력 (PS)	배사관 (지름/mm)	플로터 (지름/mm)	고무조인트 (길이/mm)	마력 (PS)	톤수 (GT)	
D200	1	30	250	500	800	30	3.0	
D250	E200	1	30	300	600	900	30	3.0
	E250	3	60	300	600	900	30	3.0
D420	E350	3	60	350	700	1000	30	3.0
	D600	E500	5	90	400	900	1000	50
E750		5	90	510	1000	1200	50	4.9
D1350	E1000	10	180	560	1100	1300	50	4.9
D4000		25	420	685	1400	1500	50	4.9
D8000		45	1000	760	1500	1700	50	4.9

(주) 1. 규격표시 E는 전동선, D는 디젤선, 수치는 규격호칭마력을 표시한다.
2. 배송관, 플로터, 고무슬리브 장치는 KS에 준한다.
3. 고무조인트 장치는 플로터(floater) 척수+1로 한다.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급여전액공제 500만원, 한도는 900만원

샐러리맨의 유일한 절세 찬스인 연말정산철이 돌아왔다.

작년까지 12월이던 연말정산 시한이 올해는 내년 1월로 1개월 늦춰졌다.

연말정산을 12월중 급여지급 시로 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이후 12월31일까지 추가로 낸 의료비 등에 대해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불편이 덜어진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되고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2명)도 폐지됐다.

과학기술·경찰·세무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학교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급여액 전액공제대상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액은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작년처럼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는 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늦어도 올해말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은 올해말에 서류를 받아 내년 1월 월급지급 때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수증 등 각종 공제혜택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일단 모두 공제대상이다.

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식(미혼)등 부양자는 제한없이 모두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만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이 연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라도 호적등본 등을 내면 관례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생명공제 영수증을 꼭 챙겨라.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적금성격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병원 의료비 영수증은 인정되지만 약국 영수증은 환자를 위한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간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재활이나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1백만원이 넘어도 추가 공제된다. 인정되는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 한방 조산소 약국 영수증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많을수록 좋다. 국방헌금(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학교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5%내에서 공제된다.

◆유치원이나 대학교등록금은 공제받지만 학원이나 무허가 유치원 놀이방 속셈학원 등은 공제가 없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 초·중·고교는 무제한으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유치원의 영수증만 인정된다.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증명서 원본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내면 불입액(연 72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담한 개인연금저축도 개인이 얻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공제받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을 가입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깎아 준다. 근로자 주식저축을 들었으면 가입증권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연간소득의 30%까지(1천만원 한도) 저축할 수 있으며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년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한다.

근로소득 세액계산(4인가족 기준)

구분	월평균급여 100만원		월평균급여 150만원		월평균급여 200만원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연 급여액 (과제대상급여)	12,000	12,000	18,000	18,000	24,000	24,000
근로소득공제	6,400	7,100	8,000	8,900	8,000	9,000
기본공제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특별공제	600	600	600	600	600	600
소득공제계	11,000	11,700	12,600	13,500	12,600	13,600
과세표준	1,000	300	5,400	4,500	11,400	10,400
산출내역	100	30	540	450	1,280	1,080
근로소득세액공제	45	13.5	233	202.5	381	399
결정세액	55	16.5	307	247.5	899	681

97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공제구분	기준 및 한도	필요서류	
근로소득	96만원·97만원 초과분의 30%, 96만원이하의 월평균소득자는 하루 50원	소득공제신고서	
소	기본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 자녀제한없음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추가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유년자·세대주·막달아)·자녀양육비 1인당 50만원	주민등록등본·장애자증명서
공	소수자	독신 1백만원, 2인가족 50만원씩 기본에 추가	주민등록등본
	보혈료	의료·고용보험 전액, 보장성은 50만원 한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제	의료비	연급여의 3%초과분, 1백만원 한도	지급명세서·영수증
	교육비	자녀·동거인양자·형제자매(수자제한없음)·배우자·1인당 유치원 70만원, 중·고 전액(해의유학은 1백50만원), 대학 2백30만원(본인전액)	납입증명서·영수증(공무원은 면제)
세	기부금	연급여의 5%내, 사망학교 기부금은 5%추가 인정	납입영수증
	개인연금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납입증명서(영수증 안함)
액	근로소득	세액 50만원이하 45%·초과분 30%, 60만원 한도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불입액(연간급여의 30%, 1천만원 한도)의 5%	납입증명서
공	주식저축	1주액이하 소수자가 96년10월말 현재 미분양주액 구입시	공제신청서·미분양주액확인서·차입금이
	이자	받은 특별예출금 이자	자 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생활정보

생활정보